

공제 약관



전국버스공제조합
National Bus Mutual-aid Association

연 혁

1981. 12. 24	개정	(육지 1519-18888)
1982. 7. 9	개정	(육지 1519-7635)
1983. 12. 13	개정	(육지 1519-14888)
1985. 7. 25	개정	(운수 33191-7368)
1986. 10. 24	개정	(운수 33191-11059)
1987. 9. 4	개정	(운수 33191-8816)
1988. 5. 6	개정	(운수 33110-4705)
1989. 12. 8	개정	(운수 33110-11416)
1990. 12. 3	개정	(지도 33110-13195)
1991. 9. 6	개정	(지도 33110-10164)
1992. 12. 2	개정	(지도 33191-455)
1995. 2. 15	개정	(지도 91182-61)
1996. 10. 26	개정	(지도 91107-503)
1997. 12. 19	개정	(지도 9117-482)
1998. 10. 28	개정	(육기 91110-695)
1999. 6. 11	개정	(육기 91110-336)
1999. 11. 10	개정	(육기 91110-867)
2000. 6. 24	개정	(육기 91110-628)
2000. 8. 16	개정	(육기 91110-805)
2002. 1. 31	개정	(육기 91110-77)
2003. 5. 6	개정	(육기 91110-378)
2005. 6. 18	개정	(육상교통기획과-2221)
2006. 10. 9	개정	(도시교통팀-4570)
2010. 12. 7	개정	(자동차생활과-6346)
2011. 5. 23	개정	(자동차생활과-2161)
2011. 10. 11	개정	(자동차운영과-223)
2015. 6. 3	개정	(자동차운영과-2100)
2016. 12. 26	개정	(자동차운영보험과-4895)
2017. 3. 1	개정	(자동차운영보험과-4548)
2018. 5. 29	개정	(자동차운영보험과-2920)
2019. 5. 1	개정	(자동차운영보험과-3987)
2020. 4. 29	개정	(자동차운영보험과-2960)
2020. 6. 25	개정	(자동차운영보험과-4197)

목 차

제1편 공제계약 대상 및 용어 정의, 자동차공제의 구성

제1조(공제계약 대상)	22
제2조(공제가입 및 계약)	22
제3조(용어의 정리)	22
제4조(자동차공제의 구성)	27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배상책임 :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

제1절 대인공제 I	29
제5조(보상하는 손해)	29
제6조(조합원)	29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29
제2절 대인공제 II 와 대물공제	30
제8조(보상하는 손해)	30
제9조(조합원)	30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31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33
제11조(조합원 개별적용)	33
제12조(지급공제금의 계산)	33
제13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34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

제14조(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6
제15조(청구절차 및 유의 사항)	36
제16조(제출 서류)	37
제17조(가지급금의 지급)	38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18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8
제19조(청구절차 및 유의 사항)	39
제20조(제출 서류)	40
제21조(가지급금의 지급)	40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22조(공제금의 분담)	41
제23조(공제조합의 대위)	42
제24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42
제25조(공탁금의 대출)	43

※부표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44
-----------------------------	----

제4편 자동차공제 일반사항

제1장 공제계약의 성립

제26조(공제계약의 성립)	45
제27조(공제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45
제28조(공제 안내자료의 효력)	46
제29조(청약 철회)	46
제30조(공제기간)	47
제31조(사고발생지역)	47

제2장 조합원 등의 의무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	48
제33조(계약 후 알릴 의무)	48
제34조(사고발생 시 의무)	49

제3장 공제계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35조(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50
제36조(조합원자동차의 양도)	50
제37조(조합원자동차의 교체)	51
제38조(공제계약의 취소)	52
제39조(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52
제40조(조합원의 공제계약 해지·해제)	52
제41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54
제42조(분담금의 환급 등)	55

제4장 분담금의 산출방법,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입 등

제43조(분담금의 산출방법)	58
제44조(분담금의 분할납입 · 납입최고 · 부활)	58
제45조(분담금의 범위요율)	59
제46조(추가분담금 등의 납입)	59
제47조(이탈결손금의 부과 및 납입)	60
제48조(자기부담금의 납입)	61
제49조(분담금의 할인 · 할증)	61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50조(공제약관의 해석)	62
제51조(공제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62
제52조(조합원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63
제53조(공제사기행위 금지)	63
제54조(분쟁의 조정)	63
제55조(관할법원)	63
제56조(준용규정)	63

부 칙

제1조	64
-----------	----

※별표와 붙임

〈별표 1〉 대인공제 지급기준	65
〈별표 2〉 대물공제 지급기준	78
〈별표 3〉 과실상계 등	82
〈별표 4〉 상해의 구분과 책임공제금의 한도금액	83
〈별표 5〉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공제금의 한도금액	100

① 자동차캐리어 탑재 「자전거손해」 특별약관	108
--------------------------------	-----

제1편 공제계약 대상 및 용어 정의, 자동차공제의 구성

제1조(공제계약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에 의한 사업용자동차의 버스

제2조(공제가입 및 계약)

1.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있는 자는 버스운송사업자로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이어야 합니다.
2. 연합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업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상실을 원인으로 한 공제조합 이탈시에는 공제규정 및 약관에 의거 손실보전금 및 이탈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리)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지급금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한 보상책임이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전에 그 비용의 일부를 조합원 또는 피해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단기요율 :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에 적용되는 (공제)요율을 말합니다.
3. 마약 또는 약물 등 : 「도로교통법」 제45조에서 정한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그 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4. 무면허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의 운전(조종)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는 무면허 또는 무자격운전(조종)을 말하며, 운전(조종)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이거나 운전(조종)이 금지된 상황에서 운전(조종)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제1편 공제계약 대상 및 용어 정의, 자동차공제의 구성

5. 무보험자동차 : 조합원자동차가 아니면서 조합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하며, 조합원이 소유한 자동차를 제외합니다.

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없는 자동차

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다.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다만, 조합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고 각각의 자동차에 적용되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서 보상되는 금액의 합계액이 이 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는 그 각각의 자동차

라. 조합원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 그 자동차

6. 부분품, 부속품, 부속기계장치

가. 부분품 :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자동차가 공장에서 출고될 때 원형 그대로 부착되어 자동차의 구성부분이 되는 재료를 말합니다.

나. 부속품 : 자동차에 정착 또는 장비되어 있는 물품을 말하며, 자동차 실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자동차에 고정되어있는 내비게이션이나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를 포함합니다. 다만 다음의 물품을 제외합니다.

(1) 연료, 보디커버, 세차용품

(2) 법령에 의해 자동차에 정착하거나 장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물건

(3) 통상 장식품으로 보는 물건

(4) 부속기계장치

다. 부속기계장치 : 의료방역차, 검사측정차, 전원차, 방송중계차 등 자동차 등록증상 그 용도가 특정한 자동차에 정착되거나 장비되어 있는 정밀 기계장치를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 ①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 ② **장비** : 자동차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또는 법령에 따라 자동차에 갖추어 두고 있는 상태
- ③ **고속도로통행료단말기** :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지급을 위해 고속도로 요금소와 통행료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 받는 송수신장치(예 : 하이패스 단말기)

7. 운전(조종) : 「도로교통법」 상 도로{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제45조(과로한 때의 운전 금지)·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 제1항·제148조(벌칙) 및 제148조의 2(벌칙)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에서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8. 운행 :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용 어 풀 이

‘운전’과 ‘운행’의 차이 : ‘운전’이라 함은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자배법상의 ‘운행’은 「도로교통법」의 ‘운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9. 음주운전(조종) : 「도로교통법」에 정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조종) 하거나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10. 의무보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제1편 공제계약 대상 및 용어 정의, 자동차공제의 구성

11. 자동차보유자 :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3호)

12. 자동차 취급업자: 자동차정비업, 대리운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탁송업 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들의 피용자 및 이들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와 감사를 포함)를 말합니다.

13. 조합원 : 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구체적인 조합원의 범위는 각각의 보장 종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가. 기명조합원 : 조합원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자 중에서 공제 계약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합원 말합니다.

나. 친족조합원 : 기명조합원과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서 조합원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 승낙조합원 : 기명조합원의 승낙을 얻어 조합원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라. 사용조합원 : 기명조합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따라 기명조합원의 사용자에게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다만, 기명조합원이 조합원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는 때에 한합니다.

마. 운전조합원 : 다른 조합원(기명조합원, 친족조합원, 승낙조합원, 사용조합원을 말함)을 위하여 조합원자동차를 운전 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14. 조합원자동차 :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자동차를 말합니다.

15. 조합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가. 조합원의 부모 : 조합원의 부모, 양부모를 말합니다.

나. 조합원의 배우자 :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말합니다.

다. 조합원의 자녀 : 법률상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를 말합니다.

16. 휴대품 및 소지품

가. 휴대품 :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나. 소지품 :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용 어 풀 이

정착 : 볼트, 너트 등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공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면 쉽게 분리할 수 없는 상태

소지품 예 :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음성재생기(CD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카세트 플레이어, 등),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

17. 대체폐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의 규정과 관계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행정지시에 따라 신자동차로 대체등록을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사업용자동차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신자동차로 대체등록 하기 위하여 노후자동차를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8. 업종(차종) 및 형별

업종(차종)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말하며, 형별이란 공제분담금요율서에 규정한 형별구분을 말합니다.

19. 신설(신규)법인

신설(신규)법인이란 새로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른 운수사업면허를 취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1편 공제계약 대상 및 용어 정의, 자동차공제의 구성

20. 신규·증차

신규·증차라 함은 새로운 노선신설 및 운행계통에 따른 정기노선 연장 또는 정기 운행횟수의 증회운행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관할 관청의 인가를 받아 늘어난 차량을 말한다.

21.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4조(자동차공제의 구성)

① 전국버스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합니다)의 자동차공제는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의 3가지 보장종목과 특별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자동차공제에 가입합니다.

1. 의무공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해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는 조합원은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보상한도에 한함)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임의공제 : 의무공제에 가입하는 조합원은 의무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보장종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③ 각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한 내용은 제2편 보장종목별 보상 내용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배상책임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담보종목	보 상 하 는 내 용
대인공제 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보상
대인공제 II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그 손해가 「대인 공제 I」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손해를 보상
대물공제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에 보상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배상책임 :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

제1절 대인공제 I

제5조(보상하는 손해) 「대인공제 I」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원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6조(조합원) 「대인공제 I」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다음에서 정하는 자 외에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인공제 I」의 조합원으로 봅니다.

1. 기명조합원
2. 친족조합원
3. 승낙조합원
4. 사용조합원
5. 운전조합원

제7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대인공제 I」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피해자가 공제조합에 직접청구를 한 경우,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 법령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다음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공제계약자나 조합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2절 대인공제 II와 대물공제

제8조(보상하는 손해)

- ① 「대인공제 II」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원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조합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대인공제 I」에서 보상하는 손해를 초과하는 손해에 한함)를 보상합니다.
- ② 「대물공제」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조합원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조합원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9조(조합원) 「대인공제 II」와 「대물공제」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 기명조합원
2. 친족조합원
3. 승낙조합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조합원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4. 사용조합원
5. 운전조합원. 다만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조합원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공제Ⅱ」와 「대물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기명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기명조합원 이외의 조합원의 고의로 인한 손해
3.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4.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5.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6. 조합원자동차가 대여사업용자동차인 경우 임차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조합원자동차를 사용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7. 조합원이 제3자와 손해배상에 관한 계약을 맺고 있을 때 그 계약으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
8. 조합원자동차를 시험용, 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②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거나 다친 경우에는 「대인공제Ⅱ」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만약, 기명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2.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의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3. 조합원자동차가 조합원의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되는 경우 그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 중인 다른 피용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입은 손해가 같은 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는 경우 그 초과손해를 보상합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공제」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조합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와 감사 또는 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을 포함)
2. 조합원이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조합원의 사용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
3. 조합원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4.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그 밖에 미술품과 탑승자와 통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
5. 탑승자와 통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 그러나 훼손된 소지품에 한하여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6. 조합원이 조합원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④ 제1항 제2호와 관련해서 공제조합이 제11조(조합원 개별적용) 제1항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액을 지급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공제계약자나 조합원에게 그 금액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제3절 배상책임에서 공통으로 적용할 사항

제11조(조합원 개별적용)

- ① 이 장의 규정은 각각의 조합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 제1호, 제6호, 제9호를 제외합니다.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 ② 제1항에 따라 제12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정하는 공제금의 한도가 증액되지는 않습니다.

제12조(지급공제금의 계산)

- ①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에서 공제조합은 이 약관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서 '공제액'을 공제한 후 공제금으로 지급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대인공제 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대인공제 II」, 「대물공제」: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가입금액

지 급 공제금	=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조합원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	+	비용	-	공제액
---------------	---	--	---	----	---	-----

- ② 소송(민사조정, 중재를 포함)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 등에 따라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을 포함)을 위 제1항의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비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 비용은 공제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
2.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용 또는 유익한 비용
3. 그 밖의 공제조합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비용

- ④ 제1항의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합니다.

1. 「대인공제 II」: 「대인공제 I」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조합원자동차가 「대인공제 I」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공제 I」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① **공제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공제가입금액(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을 한도로 보상
- ② **비용** : 공제가입금액(또는 자배법에서 정한 금액)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③ **법원의 확정판결 등** :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정결정, 중재판정 등을 말합니다.

- 2. 「대물공제」 : 사고차량을 고칠 때에 엔진, 변속기(트랜스미션) 등 부분품을 교체한 경우 교체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에 해당하는 금액

제13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

- ① 조합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조합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에서 조합원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공제조합이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 또는 「대물공제」에서 공제금을 지급하는 경우, 조합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대인공제Ⅰ」 : 1사고당 300만원
- 2. 「대인공제Ⅱ」 : 1사고당 1억원
- 3. 「대물공제」

가. 1사고당 100만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공제」 보험가입금액 이하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제2편 자동차공제에서 보상하는 내용

나. 1사고당 5,000만원(「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공제」 보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 ② 조합원은 지체 없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공제조합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공제조합은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조합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제1장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

제14조(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은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장종목	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 대물공제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배상액이 확정된 때

제15조(청구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공제조합은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공제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1항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공제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다만, 조합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③ 공제조합이 공제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공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으며,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여 조합원에게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조합원의 공제금 청구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와 경합할 때에는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우선하여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⑥ 「대인공제 I」, 「대인공제 II」에서 공제조합은 조합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가 있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피해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그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 등을 통지합니다.

제16조(제출 서류) 조합원은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제금 청구시 필요 서류	대인배상	대물배상
1. 공제금 청구서	○	○
2.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진단서 등)	○	○
3. 손해배상의 이행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4.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및 사고사실이 신고된 관할 경찰관서		
5. 배상의무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차량번호		
6. 배상의무자의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의 유무 및 내용		
7. 조합원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 배상의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그 금액		
8. 전손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도난으로 인한 전손사고시 말소 사실증명서		
전손사고 후 이전매각시 이전서류		○
전손사고 후 폐차시 폐차인수증명서		○
9.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17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조합원이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공제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공제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조합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공제조합은 이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조합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공제금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공제금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조합원이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16조(제출 서류)에서 정하는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장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직접청구

제18조(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조합원이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자는 공제조합에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는 배상책임 유무와 그 범위 등의 주장(또는 항변)사항과 동일하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19조(청구 절차 및 유의 사항)

- ①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합니다. 이 경우 조합원은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증거확보, 권리보전 등에 협력하여야 하며, 만일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②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조합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④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제4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될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를 더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⑥ 공제조합이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⑦ 공제조합은 손해배상청구권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손해배상액을 일정기간으로 정하여 정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정기금의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제20조(제출 서류) 손해배상청구권자는 보장종목별로 다음의 서류 등을 구비하여 공제조합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1. 교통사고 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2. 손해배상청구서	○	○
3.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	○
4. 그 밖에 공제조합이 꼭 필요하여 요청하는 서류 등(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사진 등. 이 경우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조합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으며, 공제조합은 수리개시 전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발급한 정비업자에게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수리개시 전에 회신하게 됩니다.)	○	○

제21조(가지급금의 지급)

- 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한 경우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에 의해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자동차보험 진료수가는 전액, 진료수가 이외의 손해배상금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을 지급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 등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할 가지급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제2항에서 정하는 지급기일 내에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가지급금에 더하여 드립니다.

- ④ 공제조합이 가지급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손해
배상청구권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것을 거절하는 이유 또는 그 지급을
연기하는 이유(추가 조사가 필요한 때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과 확인이
종료되는 시기를 포함)를 서면(전자우편 등 서면에 갈음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포함)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가지급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한 것으로 봅니다.
- ⑤ 공제조합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관련 법령상 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거나 이 약관상 공제조합의 공제금 지급책임이 발생
하지 않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⑥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은 장래 지급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나, 최종적인 손해배상액의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⑦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가지급금을 청구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제20조(제출 서류)에 정한 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3장 공제금의 분담 등

제22조(공제금의 분담) 「대인공제 I·II」, 「대물공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공제금을 분담합니다.

1. 이 공제계약과 보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다른 보험계약
(공제계약을 포함)이 있는 경우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여
각각의 보험회사(공제조합 포함)에 가입된 자동차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보다 많을 때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공제금을 지급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공제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text{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2. 이 공제계약의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 「대물공제」에서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이 공제계약에서 배상책임이 있는 조합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지급공제금의 계산)에 의한 보상한도와 범위에 따른 공제금을 각 조합원의 배상책임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지급합니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취급업자가 가입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23조(공제조합의 대위)

- ① 공제조합이 조합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다만, 공제조합이 보상한 금액이 조합원의 손해의 일부를 보상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다음의 권리는 취득하지 않습니다.
조합원이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③ 조합원은 공제조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행사 및 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4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 ①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조합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조합원을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합니다.

제3편 공제금 또는 손해배상의 청구

-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공제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이하 같음) 내에서 위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공제조합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합니다.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공제조합은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 1. 조합원이 손해배상금 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액이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 2.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제25조(공탁금의 대출) 공제조합이 제24조(합의 등의 협조·대행)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조합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조합원은 공탁금(이자를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공제조합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부표>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제15조 제2항 및 제19조 제5항 관련)

<신설 2015.12.29.>

기 간	지 급 이 자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주) 보험계약대출이율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합니다.

제4편 자동차공제 일반사항

제1장 공제계약의 성립

제26조(공제계약의 성립)

- ① 이 공제계약은 조합원이 청약을 하고 공제조합이 승낙을 하면 성립합니다.
- ② 조합원이 청약을 할 때 ‘제1회 분담금(분담금을 분납하기로 약정한 경우)’ 또는 ‘분담금 전액(분담금을 일시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하 ‘제1회 분담금 등’ 이라 함)을 납부하였을 때, 공제조합이 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발송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공제조합이 청약을 승낙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계약청약서를 조합원에게 드립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제1회 분담금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④ 공제계약이 성립하면 공제조합은 제30조(공제기간)의 규정에 따라 공제기간의 첫 날부터 보상책임을 집니다. 다만, 조합원으로부터 1회 분담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후 승낙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상합니다.

제27조(공제약관 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청약을 한 경우 조합원에게 공제약관 및 조합원 보관용 공제계약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동의하는 경우 공제약관이나 조합원 보관용 공제계약청약서(청약서 부분)를 광기록매체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법으로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합원은 계약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는 제외합니다.

가. 조합원이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계약관 및 조합원 보관용 공제계약청약서(청약서 부분)를 드리지 않은 경우

나. 조합원이 청약을 했을 때 공제조합이 청약 시 조합원에게 공계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다.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용 어 풀 이

자필서명에는 날인(도장을 찍음)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 제3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을 포함합니다.

제28조(공제 안내자료의 효력) 공제조합이 제작·사용한 공제조합 안내자료(서류·사진·도화 등 모든 안내자료를 포함)의 내용이 공계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공제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29조(청약 철회)

① 조합원은 공제계약청약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서 공제조합이 조합원에게 공제계약청약서를 드린 것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공제조합이 이를 증명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2. 의무공제에 해당하는 공제계약

3. 공제기간이 1년 미만인 공제계약

④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받은 분담금을 조합원에게 돌려 드립니다.

⑤ 청약을 철회할 당시에 이미 공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조합원이 공제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4편 자동차공제 일반사항

- ⑥ 공제조합이 제4항의 분담금 반환기일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30조(공제기간) 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공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공 제 기 간
일 반 적 용		분담금을 받은 때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기간 이전에 분담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 공제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자동차공제에 처음 계약하는 자동차 및 의무공제의 경우도 포함합니다.
예외적용	미 갹신후 재갱신차량에 대한 적용	공제계약 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기간의 첫날 24시부터 마지막 날 24시까지. 다만, 대인공제 I 의 경우 전(前) 계약의 공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전 계약의 공제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시작합니다.

용 어 풀 이

자동차공제에 처음 가입하는 자동차 :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양수인을 기명조합원으로 하는 자동차공제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다만, 조합원자동차의 양도인이 맺은 공제계약을 승계한 후 그 공제기간이 종료되어 이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제31조(사고발생지역) 공제조합은 대한민국(북한지역을 포함) 안에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조합원이 가입한 보장종목에 따라 보상해 드립니다.

제2장 조합원 등의 의무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

- ① 조합원은 청약을 할 때 다음의 사항에 관해서 알고 있는 사실을 공제조합에 알려야 하며, 제3호의 경우에는 기명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조합원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항
 2. 조합원자동차의 용도, 차종, 등록번호(이에 준하는 번호도 포함하며, 이하 같음), 차명, 연식, 적재정량, 구조 등 조합원자동차에 관한 사항
 3. 기명조합원의 성명, 연령 등 조합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사항 중에서 분담금의 계산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공제조합은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추가분담금을 더 내도록 청구하거나, 제41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제1항 제1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33조(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조합원은 공제계약을 맺은 후 다음의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실에 따라 분담금이 변경되는 경우 공제조합은 분담금을 더 받거나 돌려주고 공제계약을 승인하거나 제40조(조합원의 보험계약 해지·해제) 제1항 제2호, 제4호에 따라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조합원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된 사실
 2. 조합원자동차에 화약류, 고압가스, 폭발물, 인화물 등 위험물을 싣게 된 사실
 3. 그 밖에 위험이 뚜렷이 증가하는 사실이나 적용할 분담금에 차이가 발생한 사실

- ② 조합원은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알리지 않으면 공제조합이 알고 있는 최근의 주소로 알리게 되므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34조(사고발생 시 의무)

- ① 조합원은 사고가 생긴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지체 없이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쓰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공동불법행위에서 연대책무자 상호간의 구상권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의 보전과 행사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2. 다음 사항을 공제조합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가. 사고가 발생한 때, 곳, 상황 및 손해의 정도
 - 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사고에 대한 증인이 있을 때에는 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
 3.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미리 공제조합의 동의 없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응급치료, 호송 그 밖의 긴급조치는 공제조합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의 소송을 제기하려고 할 때 또는 제기 당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알려야 합니다.
 5. 조합원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6. 공제조합이 사고를 증명하는 서류 등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공제조합이 사고에 관해 조사하는데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액이나 회복할 수 있었을 금액을 공제금에서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장 공제계약의 변동 및 분담금의 환급

제35조(공제계약 내용의 변경)

- ① 조합원은 의무공제를 제외하고는 공제조합의 승낙을 얻어 다음에 정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공제 계약청약서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조합원. 다만, 조합원이 이 공제계약의 권리·의무를 조합원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이전함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36조(조합원자동차의 양도)에 따릅니다.
 - 2. 공제가입금액, 특별약관 등 그 밖의 계약의 내용
- ② 공제조합은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분담금이 변경된 경우 조합원에게 분담금을 반환하거나 추가분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공제계약 체결 후 기명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이 공제계약에 의한 조합원의 권리·의무는 사망시점에서의 법정상속인에게 이전합니다.

제36조(조합원자동차의 양도)

- ①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에 조합원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공제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공제조합에 통지하여 공제조합이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이 공제계약을 적용합니다. 법인의 합병 또는 사업권의 전부(부분)를 양도한 때에는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 ② 공제조합이 제1항에 의한 조합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자동차의 양수인에게 적용되는 할인할증율에 따라 분담금의 차이가 나는 경우 조합원자동차의 양도되기 전의 조합원에게 남은 분담금을 돌려드리거나, 조합원자동차의 양도 후의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청구합니다.

제4편 자동차공제 일반사항

- ④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조합원자동차가 양도된 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에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이 조합원자동차를 상속하는 경우 이 공제계약도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제기간이 종료되거나 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기명조합원으로 하는 새로운 공제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제37조(조합원자동차의 교체)

- ① 조합원이 공제기간 중에 기존의 조합원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조합원이 이 공제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공제조합에 통지하여 공제조합이 승인한 때부터 이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조합원자동차에 대한 공제계약의 효력은 공제조합이 승인할 때에 상실됩니다.
- ② 공제조합이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항에 의한 승인 여부를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 ③ 조합원자동차를 대체폐차한 때에는 대체된 자동차를 등록한 날로부터 대체된 자동차에 이 공제계약이 승계됩니다.
- ④ 공제조합이 제1항에 대한 승인 시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하는 분담금이 차이가 나는 경우 조합원에게 남는 분담금을 돌려드리거나 추가분담금을 청구합니다. 이 경우 기존의 조합원자동차를 말소등록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록한 날부터 승계를 승인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일할로 계산하여 조합원에게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⑤ 공제조합이 제1항의 승인을 거절한 경우 교체된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text{일할계산의 사례} : \text{기납입분담금 총액} \times \frac{\text{해당기간}}{365(\text{윤년:366})}$$

제38조(공제계약의 취소) 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사기에 의해 공제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39조(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공제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3월이 경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계약이 효력을 상실합니다.

제40조(조합원의 공제계약 해지·해제)

- ① 조합원은 언제든지 임의로 공제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공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조합원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공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조합원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다만, 제36조(조합원자동차의 양도) 또는 제37조(조합원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양수인 또는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3. 조합원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다만 제37조(조합원자동차의 교체)에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만, 제37조(조합원자동차의 교체)에

제4편 자동차공제 일반사항

따라 공제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된 경우에는 의무공제에 대한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5. 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조합원자동차에 대하여 이 공제계약과 공제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복되는 의무공제가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을 맺은 경우
 6. 공제조합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2에서 정하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8.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자동차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9.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 ② 이 공제계약이 의무공제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공제계약을 맺기 전에 조합원자동차에 대하여 의무공제가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조합원은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한 후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로부터 공제기간이 개시되는 의무공제가 포함된 새로운 공제계약을 맺은 경우에 한하여 이 공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용 어 풀 이

- ① **해지**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의 의사표시)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② **해제**라 함은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조합원 또는 공제조합의 의사표시) 소급하여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41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

- ① 공제조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이내에 공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2호·제4호·제5호에 의한 계약해지는 의무공제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을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의 사항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 가. 공제계약을 맺은 때에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였을 때
 - 나. 조합원이 공제금을 지급할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청약서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신청하여 공제조합이 이를 승인하였을 때
 - 다.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맺은 날부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6개월이 경과한 때
 - 라.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항이 공제조합이 위험을 측정하는데 관련이 없을 때 또는 적용할 분담금에 차액이 생기지 않은 때

용 어 풀 이

중대한 과실이란 주의 의무위반이 현저한 과실. 즉 극히 근소한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부주의로 이를 예견하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과실과의 구별은 사회통념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제33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 정한 사실이 생긴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다만, 조합원이 알려야 할 사실이 뚜렷하게 위험을 증가시킨 것이 아닌 때에는 공제조합이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3. 조합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에 정한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4.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은 후에 제33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 제36조(조합원자동차의 양도) 제4항, 제37조(조합원자동차의 교체) 제4항에 따라 추가분담금을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합원이 그 분담금을 내지 않는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못합니다.

가. 공제조합이 제32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안 날부터 1월이 지난 경우

나. 공제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제33조(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하는 사실을 통지받은 후 1월이 지난 경우

5. 공제금의 청구에 관하여 조합원, 공제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 대리인의 사기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공제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지 이전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공제조합은 지급한 공제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전 알릴 의무 또는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때에는 공제조합은 보상합니다.

③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다른 보험의 가입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공제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제42조(분담금의 환급 등)

- ① 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분담금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전 분담금과 변경 후 분담금의 차액을 더 받거나 돌려 드립니다.
- ② 공제조합의 고의·과실로 분담금이 적정하지 않게 산정되어 조합원이 적정분담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경우, 공제조합은 이를 안 날 또는 조합원이

반환을 청구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적정분담금을 초과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납입한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공제조합에게 고의·과실이 없을 경우에는 적정분담금을 초과한 금액만 돌려드립니다.

③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때, 또는 그 효력이 상실된 때에는 다음과 같이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1. 조합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제27조(공제약관 교부 및 설명 의무 등)** 제3항에 의해 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공제조합에 납입한 분담금의 전액, 효력 상실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경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 일단위로 계산한 분담금

2. 조합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는 경우 :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한 분담금을 뺀 잔액

3. 공제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분담금을 환급하지 않습니다.

4. 분담금 환급 후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하는 환급기산일 이전의 사고접수(지연접수)시에는 환급한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④ 제3항에서 '조합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합니다.

1. 조합원이 임의 해지하는 경우(의무공제 해지는 제외)

2. 공제조합이 **제38조(공제계약의 취소)** 또는 **제41조(공제조합의 공제계약 해지)**에 따라 공제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3.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공제계약의 효력 상실

⑤ 공제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분담금 전액을 환급합니다.

⑥ 이 약관에 의해 공제조합이 조합원이 낸 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드리는 경우에는 분담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⑦ 공제조합이 제6항의 반환기일이 지난 후 분담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보험개발원이 공시한 보험계약대출이율에 따라 연 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드립니다. 다만, 이 약관에서 이자의 계산에 관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⑧ 운휴

제4편 자동차공제 일반사항

1. 조합원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휴업·폐업)에 의거 공제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휴업하여 이 공제에 가입한 조합원 자동차의 운행을 중지한 때에는 그 운행중지기간(이하 ‘운휴기간’이라 함)이 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5일을 뺀 나머지 운휴기간에 대하여 일할로 계산한 분담금을 돌려드립니다.
2. 운휴기간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관계관청에 휴업 종료신고가 된 날의 전날까지로 합니다. 다만, 조합원이 관계관청에 휴업종료 신고가 있기 전에 공제조합에 운행재개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접수하기 전날까지로 합니다.
3. 운휴기간이 발생한 경우 조합원은 관계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운휴기간의 개시일자와 조합원 자동차의 명세를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관계관청에 휴업 종료신고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공제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 제2항에 의거 심각 단계의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 한하여 관계관청의 운휴허가 범위는 있으나 운휴차량 명세서를 입증하기 어려울때는, 운휴허가 범위 내에서 조합원자동차의 명세가 아닌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자료(디지털 운행기록계, 사업조합의 차량번호판 영치 확인서 등)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4. 운휴기간 중에 발생한 조합원자동차의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하며, 운휴기간 중에 조합원자동차가 운행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공제조합에 통지한 명세상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5. 계약기간 중 운휴개시일 이전에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하는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담보(대인, 대물)에 대한 분담금은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운휴기간에 대한 분담금을 환급 후 공제조합이 보상하여야 하는 운휴개시일 이전의 사고접수(지연접수)시에는 보상하되 환급된 분담금은 공제조합에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장 분담금의 산출방법, 분담금 및 추가분담금 납입 등

제43조(분담금의 산출방법) 자동차공제 분담금은 공제조합의 공제규정 제8조 및 제9조 및 분담금요율서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예 시

납입할 분담금	=	기본분담금	×	범위요율	×	할인·할증 요율
---------	---	-------	---	------	---	----------

- 기본분담금 : 차량의 업종, 형별, 공제계약금액 등에 따라 미리 정해놓은 기본적인 분담금
- 할인·할증요율 : 사고발생 및 손해를 실적에 따라 적용하는 요율
- 범위요율 : 공제규정에 의거하여 요율서에 정한 지부별 적용요율
- 업종구분 : 시내, 2층버스, 마을, 시외, 농어촌, 고속, 전세, 장의 등으로 구분합니다.

※ 지부별 기본분담금, 할인·할증요율표, 범위요율, 업종구분은 분담금요율서로 정합니다.

제44조(분담금의 분할납입·납입최고·부활)

① 분담금의 분할납입

1. 조합원이 공제계약을 맺을 때에는 공제계약기간에 해당하는 분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일시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합원이 분할납입을 요청하여 이를 승인한 때에는 분할하여 납입하게 할 수 있으나, 대인공제 I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2. 조합원이 단서규정의 분담금을 현금과 은행도 어음으로 납입한 경우, 어음은 현금 기간이 끝나는 전일까지 결제되어야 합니다.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금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공제계약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② 분할분담금의 납입최고

제4편 자동차공제 일반사항

1.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14일간의 납입 최고기간을 둡니다. 공제조합은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2. 조합원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공제계약은 해지 됩니다.
3.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할분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 합니다. 이때 동 약관 제33조 ②항에 따라 조합원이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청약서에 기재된 조합원의 주소를 공제조합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③ 부활

1. 공제계약이 해지되고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공제계약이 해지된 후 30일 안에 조합원이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 납입된 분담금을 납입한 때에는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됩니다.
2. 공제계약이 부활된 경우,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이 해지된 때로부터 미 납입 분담금을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 합니다.

제45조(분담금의 범위요율) 공제규정 제8조 제3항에 의거 지부별 손해율이 급격하게 변동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담금을 30% 범위 내에서 가중하거나, 20% 범위 내에서 경감하여 조정 할 수 있습니다.

제46조(추가분담금 등의 납입) 공제규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추가분담금의 납입 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연도 말 결산 결과 누적 사업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 ① 사업결손금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 중 공제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당해 조합원에게 추가분담금을 부과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보전하여야 합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받아 추가분담금 납입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분담금을 체납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미지급공제금에서 체납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1대당 추가 분담금의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begin{array}{lcl} \text{1대당 추가분담금} & & \\ \text{(사업결손금)} & = & \frac{\text{전국(지부) 총 누적손실금}}{\text{년도(기산 월)말 총 계약대수}} \end{array}$$

- ③ 사업연도 중 결손금이 현저하게 발생한 때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제47조(이탈결손금의 부과 및 납입) 공제규정 제25조 제4항, 제5항, 제6항에 의하여 공제 이탈 결손금의 납입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적용기준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① 공제조합에 계약된 조합원이 손보사로 이탈(부분이탈)할 경우 이탈 전 (월말일자 기준) 과거 10년(공제계약기간 10년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공제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손실금액을 보전하여야 합니다. 단, 부분 이탈 시는 총 결손금액 중 해당대수 대 이탈대수 비율에 의한 해당액을 손실보전금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 ② 적자지부의 후자 조합원이 손보사로 이탈(부분이탈 포함)할 경우 이탈 월말일자를 기준하여 지부 누적 경영수지(결산서)상 총 손실금액을 공제 이탈 전 계약대수 대 이탈대수 비율에 의한 해당액을 손실보전금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 ③ 적자지부의 적자 조합원이 손보사로 이탈할 경우 제1항에 해당하는 손실금액과 제2항에 해당하는 손실금액 중 많은 금액을 손실보전금으로 보전하여야 합니다.

손실보전금의 계산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text{손실보전금 (이탈결손금)} = \frac{\text{경과분담금-(지급공제금+미결추산액)}}{\text{이탈조합원의 이탈 전월말 총 계약대수}} \times \text{이탈 대수}$$

- ④ 공제약관 제46조 1항 내지 2항 및 동조 1항 내지 3항은 사업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공제약관 제2조에 의한 공제가입 및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제48조(자기부담금의 납입) 공제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하여 조합원 차량의 사고발생 시 일정액의 자기부담금의 납입통보를 받은 조합원은 납입기일 안에 자기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제49조(분담금의 할인·할증)

- ① 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수정경과분담금 및 수정손해율에 따라 분담금을 할인 또는 할증할 수 있습니다.
- ② 조합원이 신규증차 계약시 적용률은 기본 100%를 적용하고 할인차량에 대하여는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 ③ 손해보험사 차량 인수 계약시의 적용률은 보험회사에서 적용받는 할인·할증률을 공제조합에서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할증일 경우에는 100%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이 분담금의 할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공제계약일을 기준하여 적용받아야 할 요율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서류 등을 공제조합에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5장 그 밖의 사항

제50조(공제약관의 해석)

- ① 공제조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조합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공제조합은 공제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공제조합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 등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1조(공제조합의 개인정보이용 및 공제계약 정보의 제공)

- ① 공제조합은 제16조(제출서류) 제5호, 제6호의 배상의무자의 개인 정보와 제34조(사고발생 시 의무) 제2호 나목, 다목의 피해자, 가해자 및 증인의 개인정보를 공제사고의 처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공제조합은 공제계약에 의한 의무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한 판단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내지 제24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다음의 사항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계단체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기명조합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와 조합원자동차의 차량 번호, 형식, 연식
 2. 계약일시, 공제종목, 공제가입금액, 자기부담금 및 분담금 할인·할증에 관한 사항, 특별약관의 가입사항, 계약해지 시 그 내용 및 사유
 3. 사고일시 또는 일자, 사고내용 및 각종 공제금의 지급내용 및 사유

제52조(조합원자동차 등에 대한 조사) 공제조합은 조합원자동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조합원에게 필요한 설명 또는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합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이러한 조사 또는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제53조(공제사기행위 금지) 조합원, 피해자 등이 공제사기행위를 행한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4조(분쟁의 조정) 이 공제계약의 내용 또는 공제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조합원, 손해배상청구권자, 그 밖에 이해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공제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55조(관할법원) 이 공제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공제조합의 본부 또는 지부 소재지 중 조합원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내의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56조(준용규정) 이 공제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부 칙 약관개정 (자동차운영보험과-2960호('20.4.29))

제1조 국토교통부 승인일('20. 4. 29.) 기준 계약차량중인 차량에 대해 적용합니다.

다만, 공제약관 제42조 ③항 4호, ⑧항 5호는 기존 지침을 강조한 사항으로 기존대로 적용, 제42조 ⑧항 3호 단서조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심각” 단계 발령시부터 적용하나, 2020년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한하여 “경계” 단계가 발령된 경우에도 소급 적용합니다.

<별표 1> 대인공제 지급기준

가. 사망

각 보장종목별 공제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1. 장례비	지급액 : 5,000,000원
2. 위자료	가. 사망자 본인 및 유족의 위자료 (1)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원 (2) 사망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원 나.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 민법상 상속규정에 따름.
3. 상 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사망한 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제세액 공제)에서 본인의 생활비(월평균현실소득액에 생활비율을 곱한 금액)를 공제한 금액에 취업 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 다만, 나. (4)현역병 등 군 복무 해당자의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하지 않음. <산 식> $(월평균현실소득액 - 생활비) \times (사망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사망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차등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 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 실 수익액	(나) 산정방법 1) 현실소득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세법에 의한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피해자가 근로의 대가로서 받은 보수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는 인상 된 금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용 어 풀 이 ① 급여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일용근로자 이외의 자를 말함 ② 근로의 대가로 받은 보수라 함은 본봉, 수당, 성과급,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을 말하며, 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가진 대가는 제외함 ③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라 함은 사고 발생 전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를 말함. 다만, 신규취업자, 신규사업개시자 또는 사망 직전에 보수액의 인상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세법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신고하거나 납부(신고 또는 납부가 지체된 경우는 제외함) 하여 발행된 관계증빙서류 포함함 나) 사업소득자 ①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증명된 수입액에서 그 수입을 위하여 필요한 제경비 및 제세금을 공제하고 본인의 기여율을 감안하여 산정 한 금액 <산 식> $\{ \text{연간수입액} - \text{주요경비} - (\text{연간수입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 \text{제세공과금} \} \times \text{노무기여율} \times \text{투자비율}$ (주) 1. 제 경비가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위 기준경비율을 또 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그 증명된 경비를 공제함. (주) 2. 소득세법 등에 의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신 그 비율을 적용함. (주) 3. 투자비율은 입증이 불가능할 때에는 1/동업자로 함. (주) 4. 노무기여율은 85/100를 한도로 타당한 율을 적용함.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 실 수익액	용 어 풀 이 ① 주요경비 : 매입비용(재화의 매입, 가공비용, 운반비 등을 말하며 사용 용 고정자산 매입은 제외), 임차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 장치 등 고정 자산에 대한 임차료), 인건비(종업원의 급여나 임금 및 퇴직 급여) 등을 말합니다. ② 기준경비율 :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③ 단순경비율 :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의 직전년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등에 적용하는 경비율을 말합니다. ② 본인이 없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 ①의 산식에 따르지 않고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③ 위 ①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경우에는 일용 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용 어 풀 이 ① 이 공제계약에서에서 사업소득자라 함은 소득세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를 말함. ② 이 공제계약에서 일용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 작성 지정기관(대한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중 공사부문은 보통인부, 제조부문은 단순노무종사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함. <산 식> (공사부문 보통인부임금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임금)/2 * 월 임금 산출 시 25일을 기준으로 산정 다) 그 밖의 유직자(이자소득자, 배당소득자 제외) 세법상의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액에서 제세액을 공제한 금액. 다만, 부동산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하며, 이 기준에서 정한 여타의 증명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득과 일용근로자 임금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 실 수익액	용 어 풀 이 ① 기술직 종사자가 ‘관련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라 함은 자격증, 노무비 지급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공제조합에 제출한 것을 말함. 2) 현실소득액을 증명하기 곤란한 자 세법에 의한 관계 관계증빙서에 따라 소득을 산정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함. 가) 급여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나) 사업소득자 일용근로자 임금 다) 그 밖의 유직자 일용근로자 임금 라) 위 가), 나), 다)에 해당하는 자로서 기술직 종사자는 통계법 제15조에 의한 통계작성 지정기관(공사부문 : 대한건설협회, 제조부문 : 중소기업중앙회)이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에 의한 해당직종 임금이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정함. 다만, 사고발생 직전 1년 이내 해당직종에 종사하고 있었음을 관련 서류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한 경우에 한함. 3) 미성년자로서 현실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에 미달한 자 : 만19세에 이르기까지는 현실소득액, 만19세 이후는 일용근로자 임금 (2) 가사종사자 : 일용근로자 임금 (3) 무직자(학생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가) 현역병 등 군 복무자(급여 소득자는 제외)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나) 현역병 등 군 복무예정자 :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단,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용 어 풀 이 ① ‘현역병 등’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의무소방원·의무경찰, 사회복지요원을 말함 ② ‘병역법에 따른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19조에 따른 기간, 의무소방원·의무경찰은 병역법 제25조에 따른 기간, 사회복지요원은 병역법 제42조에 따른 기간에 대해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 ③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또는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평균을 말함

항 목	지 급 기 준								
3. 상 실 수익액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인 자 (가)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을 인정함. (나)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따라 증명된 소득과 증명 곤란한 소득이 있는 때 혹은 증명이 곤란한 소득이 두 가지 이상 있는 경우에 이 기준에 의하여 인정하는 소득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함. (6) 외국인 (가) 유직자 ① 국내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자로서 그 입증이 가능한 자 : 위 1)의 현실소득액의 증명이 가능한 자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으로 산정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자 : 일용근로자 임금 (나) 무직자(학생 및 미성년자 포함) : 일용근로자 임금 다. 생활비율 : 1/3 라. 취업가능월수 (1) 취업가능 연한을 65세로 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 취업가능월수를 산정함. (2) 피해자가 사망 당시(후유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노동능력상실일) 62세 이상인 경우에는 「62세 이상의 취업가능월수」에 의하되, 사망일 또는 노동능력상실일부터 정년에 이르기까지는 월현실소득액을, 그 이후부터 취업가능월수까지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62세 이상 피해자의 취업가능월수〉 <table border="1"> <thead> <tr> <th>피해자의 나이</th><th>취업가능월수</th></tr> </thead> <tbody> <tr> <td>62세부터 67세 미만</td><td>36월</td></tr> <tr> <td>67세부터 76세 미만</td><td>24월</td></tr> <tr> <td>76세 이상</td><td>12월</td></tr> </tbody> </table> (3) 취업가능연한이 사회통념상 65세 미만인 직종에 종사하는 자인 경우 해당 직종에 타당한 취업가능연한 이후 65세에 이르기까지의 현실소득액은 사망 또는 노동능력상실 당시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인정함. (4) 취업시기는 19세로 함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피해자의 나이	취업가능월수								
62세부터 67세 미만	36월								
67세부터 76세 미만	24월								
76세 이상	12월								

항 목	항 목
3. 상 실 수익액	(5) 외국인 (가) 적법한 일시체류자인 경우 생활 본거지인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적법한 일시 체류자가 국내에서 취업활동을 한 경우 아래 (다)를 적용함. (나) 적법한 취업활동자인 경우 외국인 근로자의 적법한 체류기간 동안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적법한 체류기간 종료 후에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만 사고 당시 남은 적법한 체류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고일부터 3년간 국내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다) 그 밖의 경우 사고일부터 3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함. 용 어 풀 이 ① 적법한 일시체류자라 함은 국내 입국허가를 득하였으나 취업활동의 허가를 얻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② 적법한 취업활동자라 함은 국내 취업활동 허가를 얻은 자를 말합니다. 마. 라이프니츠 계수 : 법정이율 월 5/12%, 복리에 따라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계산하는 방법 <산 식> $\frac{1}{1+i} + \frac{1}{(1+i)^2} + \dots + \frac{1}{(1+i)^n}$ i=5/12%, n=취업가능월수

나. 부 상

별표1 대인공제 지급기준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공제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1] 에서 정한 상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항 목	지 급 기 준																																								
1. 적 극 손 해	가. 구조수색비 :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필요 타당한 실비 나. 치료관계비 : 의사의 진단기간에서 치료에 소요되는 다음의 비용(외국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내의료기관에서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 다만, 국내의료기관에서 치료가 불가능하여 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타당한 비용)으로 하되, 관련법규에서 환자의 진료비로 인정하는 선택진료비를 포함함. (1) 입원료 (가) 입원료는 대중적인 일반병실(이하 ‘기준병실’이라 함)의 입원료를 지급함. 다만, 의사가 치료상 부득이 기준병실 보다 입원료가 비싼 병실(이하 ‘상급병실’이라 함)에 입원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나) 병실의 사정으로 부득이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병실의 입원료를 지급함. 만약, 입원일수가 7일을 넘을 때에는 그 넘는 기간은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다) 조합원이나 피해자의 희망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였을 때는 기준병실의 입원료와 상급병실의 입원료와의 차액은 지급하지 아니함. (2) 응급치료, 호송, 진찰, 전원, 퇴원, 투약, 수술(성형수술 포함), 처치, 의지, 의치, 안경, 보청기 등에 소요되는 필요타당한 실비 (3) 치아보철비 : 금구조관보철(백금관보철 포함) 또는 임플란트(실제 시술한 경우로 1치당 1회에 한함). 다만,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2.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책임공제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함. (단위 : 만원) <table><tr><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h>급별</th><th>인정액</th></tr><tr><td>1급</td><td>200</td><td>5급</td><td>75</td><td>9급</td><td>25</td><td>13급</td><td>15</td></tr><tr><td>2급</td><td>176</td><td>6급</td><td>50</td><td>10급</td><td>20</td><td>14급</td><td>15</td></tr><tr><td>3급</td><td>152</td><td>7급</td><td>40</td><td>11급</td><td>20</td><td></td><td></td></tr><tr><td>4급</td><td>128</td><td>8급</td><td>30</td><td>12급</td><td>15</td><td></td><td></td></tr></table> 다. 과실상계 후 후유장애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애 공제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공제금 한도내에서 부상 위자료를 지급함.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00	5급	75	9급	25	13급	15	2급	176	6급	50	10급	20	14급	15	3급	152	7급	40	11급	20			4급	128	8급	30	12급	15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00	5급	75	9급	25	13급	15																																		
2급	176	6급	50	10급	20	14급	15																																		
3급	152	7급	40	11급	20																																				
4급	128	8급	30	12급	15																																				

항 목	지 급 기 준
3. 휴 업 손 해	가. 산정방법 : 부상으로 인하여 휴업함으로써 수입의 감소가 있었음을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휴업기간 중 피해자의 실제 수입감소액의 85% 해당액을 지급함. 용 어 풀 이 ①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경우’라 함은 세법상 관계 서류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 등을 통해 증명한 경우를 말함. <산 식> $1\text{일 수입감소액} \times \text{휴업일수} \times \frac{85}{100}$ 나. 휴업일수의 산정 (1)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감안, 치료 기간의 범위에서 인정 (2) 사고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취업가능연한을 초과한 경우, 휴업일수를 산정하지 아니함. 다만, 위 가 : 에 따라 관계 서류를 통해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취업가능연한 : 65세를 기준으로 함. 다만, 법령, 단체협약 또는 그 밖의 별도의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이에 의함. 다. 수입감소액의 산정 (1) 유직자 (가)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수입 감소액을 산정함. (나) 실제의 수입감소액이 위 (가)의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수입 감소액으로 함. (2) 가사종사자 (가) 일용근로자 임금을 수입감소액으로 함. 용 어 풀 이 ① 가사종사자라 함은 사고당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활동에 종사하는 자로서 주민등록 관계 서류와 세법상 관계서류 등을 통해 해당 사실을 증명한 사람을 말함. (3) 무직자 (가) 무직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나) 유아, 연소자, 학생, 연금생활자, 그 밖의 금리나 임대료에 의한 생활자는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것으로 함. (4)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별표1 대인공제 지급기준

항 목	지 급 기 준								
4. 간병비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인정 대상 (1) 대인공제 I 상해구분상 1~5급에 해당하는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2) 동일한 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등급 1~5급의 상해를 입은 7세 미만의 자 중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 인정함. (3) 의료법 제4조의2에 따른 비용을 공제조합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비용 및 기간에 관계없이 인정하지 않음. 용 어 풀 이 ① ‘객관적인 증빙자료’라 함은 진단서, 진료기록, 입원기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제조합에서 상해등급과 신분관계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함. 다. 지급 기준 (1) 위 인정대상 (1)에 해당하는 자는 대인공제 I 상해구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상해등급별 인정일수를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2) 위 인정대상 (2)에 해당하는 자는 최대 60일을 한도로 하여 실제 입원기간을 인정함. (3) 간병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1일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함. (4) 위 (1)과(2)의 간병비가 피해자 1인에게 중복될 때에는 양자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상해등급</th><th>인정일수</th></tr> </thead> <tbody> <tr> <td>1급~2급</td><td>60일</td></tr> <tr> <td>3급~4급</td><td>30일</td></tr> <tr> <td>5급</td><td>15일</td></tr> </tbody> </table>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상해등급	인정일수								
1급~2급	60일								
3급~4급	30일								
5급	15일								
5. 그 밖의 손해배상금	위 1. 내지 4. 외에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함. 가. 입원하는 경우 입원기간 중 한 끼당 4,030원(병원에서 환자의 식사를 제공하지 않거나 환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제공하는 식사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 한함) 나. 통원하는 경우 실제 통원한 일수에 대하여 1일 8,000원								

다. 후유장해

각 보장종목별 공제계약금액 한도 내에서 다음의 금액을 지급하되, 「대인 공제 I」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에서 정한 후유장해급별 보상한도 내에서 지급함.

구 분	지 급 기 준																		
1. 위자료	가. 청구권자의 범위 : 피해자 본인 나. 지급기준 :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1)항 또는 (2)항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피해자 본인에게 지급함.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가)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45,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나)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다) 상기 (가), (나)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 약관에 따른 가정간호비 지급 대상인 경우에는 아래 기준을 적용함. ①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미만인 경우 : $80,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② 후유장애 판정 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 $50,000,000\text{원}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85\%$ ^(*) 후유장애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애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애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단위 : %, 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노동능력상실률</th><th>인 정 액</th></tr> </thead> <tbody> <tr> <td>45% 이상 50% 미만</td><td>400</td></tr> <tr> <td>35% 이상 45% 미만</td><td>240</td></tr> <tr> <td>27% 이상 35% 미만</td><td>200</td></tr> <tr> <td>20% 이상 27% 미만</td><td>160</td></tr> <tr> <td>14% 이상 20% 미만</td><td>120</td></tr> <tr> <td>9% 이상 14% 미만</td><td>100</td></tr> <tr> <td>5% 이상 9% 미만</td><td>80</td></tr> <tr> <td>0% 초과 5% 미만</td><td>50</td></tr> </tbody> </table> 다. 후유장애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후유장애 위자료를 지급함. 다만, 부상 위자료 해당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후유장애 위자료로 지급함.	노동능력상실률	인 정 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 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노동능력상실률	인 정 액																		
45% 이상 50% 미만	400																		
35% 이상 45% 미만	240																		
27% 이상 35% 미만	200																		
20% 이상 27% 미만	160																		
14% 이상 20% 미만	120																		
9% 이상 14% 미만	100																		
5% 이상 9% 미만	80																		
0% 초과 5% 미만	50																		

구 분	지 급 기 준
2. 상 실 수익액	가. 산정방법 : 피해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 노동능력상실률과 노동능력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함. 다만, 소득의 상실이 없는 경우에는 치아보철로 인한 장애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함. <산 식> $\text{월평균현실소득액} \times \text{노동능력상실률} \times (\text{노동능력상실일부터 공제금지급일까지의 월수} + \text{공제금지급일부터 취업가능연한까지의 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 나.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 (1) 유직자 (가) 산정대상기간 ① 급여소득자 : 사고발생 직전 또는 노동능력 상실 직전 과거 3개월로 하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급여의 변동이 있는 경우와 상여금, 체력단련비, 연월차휴가보상금 등 매월 수령하는 금액이 아닌 것은 과거 1년간으로 함. ② 급여소득자 이외의 자 : 사고발생 직전 과거 1년간으로 하며, 그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함. (나) 산정방법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2) 가사종사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3) 무직자(학생 포함)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5) 소득이 두 가지 이상의 자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6) 외국인 사망한 경우 현실소득액의 산정방법과 동일 다. 노동능력상실률 맥브라이드 식 후유장애 평가방법에 따라 일반의 옥내 또는 옥외 근로자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부상 치료 진단을 실시한 의사 또는 해당과목 전문의가 진단·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며, 그 판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라. 노동능력 상실기간 사망한 경우 취업가능월수와 동일 마. 라이프니츠 계수 사망한 경우와 동일

구 분	지 급 기 준
3. 가 정 간호비	가. 인정대상 치료가 종결되어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된 때에 1인 이상의 해당 전문의로부터 노동능력상실률 100%의 후유장애 판정을 받은 자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또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로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에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개호를 요하는 자 (1) 식물인간상태의 환자 뇌손상으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상태에 있는 자 (가) 스스로는 이동이 불가능하다. (나) 자력으로서는 식사가 불가능하다. (다) 대소변을 가릴 수 없는 상태이다. (라) 안구는 겨우 물건을 쫓아가는 수가 있으나, 알아보지는 못한다. (마) 소리를 내도 뜻이 있는 말은 못한다. (바) ‘눈을 떠라’, ‘손으로 물건을 쥐어라’하는 정도의 간단한 명령에는 가깝스로 응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의 의사소통은 불가능하다. (2)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완전마비 환자 척수손상으로 인해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마비된 환자로서 다음 항목에 모두 해당되는 자 (가) 생존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동작(식사, 배설, 보행 등)을 자력으로 할 수 없다. (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의자로 옮기거나 집안에서 걷기 등의 자력 이동이 불가능하다. (다) 욕창방지를 위해 수시로 체위를 변경시켜야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상시 개호를 필요로 한다. 나. 지급기준 가정간호 인원은 1일 1인 이내에 한하며, 가정간호비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공제금수령권자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퇴원일부터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함.

별표1 대인공제 지급기준

<표 1> 상해등급별 보상한도금액 (대인공제 I - 책임공제)

(단위 : 만원)

상해 등급	05.02.22. 이후사고	16.04.01 이후사고	상해 등급	05.02.22. 이후사고	16.04.01 이후사고
1급	2,000	3,000	8급	240	300
2급	1,000	1,500	9급	240	240
3급	1,000	1,200	10급	160	200
4급	900	1,000	11급	160	160
5급	900	900	12급	80	120
6급	500	700	13급	80	80
7급	500	500	14급	80	50

주)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상해구분에 의함

<표 2> 후유장해등급별 보상한도금액 (대인공제 I - 책임공제)

(단위 : 만원)

장해 등급	05.02.22. 이후사고	16.04.01 이후사고	장해 등급	05.02.22. 이후사고	16.04.01 이후사고
1급	10,000	15,000	8급	3,000	4,500
2급	9,000	13,500	9급	2,250	3,800
3급	8,000	12,000	10급	1,880	2,700
4급	7,000	10,500	11급	1,500	2,300
5급	6,000	9,000	12급	1,250	1,900
6급	5,000	7,500	13급	1,000	1,500
7급	4,000	6,000	14급	630	1,000

주) 장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후유장해 구분에 의함

<별표 2> 대물공제 지급기준

구 분	지 급 기 준
1. 수 리 비 용	가. 지급대상 원상회복이 가능하여 수리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수리비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용 다만, 경미한 손상의 경우 보험개발원이 정한 경미손상 수리기준에 따라 복원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로 함 (2)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 경우 차령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3)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액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지급함. 다만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30%를 한도로 함. (가) 내용연수가 지난 경우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 제2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 받는 승용자동차나 승합자동차 (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차량충당연한을 적용받는 화물자동차 용 어 풀 이 경미한손상이라 함은 외장부품 중 자동차의 기능과 안전성을 고려할 때 부품교체 없이 복원이 가능한 손상 내용연수라 함은 보험개발원의 「차량가액기준 표」에서 정하는 내용연수를 말합니다.
2. 교 환 가 액	가. 지급대상 피해물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리비용이 피해물의 사고 직전가액을 초과하여 수리하지 않고 폐차하는 경우 (2)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 상당액 (2) 사고 직전 피해물의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용품을 취득할 때 실제로 소요된 필요타당한 비용

구 분	지 급 기 준
3. 대차료	가. 대상 비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다른 자동차를 대신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대차를 하는 경우 (가) 대여자동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대여사업자에게서 차량만을 빌릴 때를 기준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빌리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다만, 피해차량이 사고시점을 기준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차량과 동일한 규모의 대여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대여자동차를 기준으로 함. (나)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차종(사업용 해당차종의 구분이 곤란할 때에는 사용방법이 유사한 차종으로 하며, 이하 같음) 휴차료 일람표 범위에서 실임차료. 다만, 5톤 이하 또는 벤형 화물자동차 및 대형 이륜자동차(260cc 초과)의 경우 중형승용차급 중 최저요금 한도로 대차 가능 (2) 대차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0% 상당액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대여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위(1)-(가) 단서에 따라 대차를 하는 경우 소요되는 대차료의 30% 상당액 (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경우: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의 30% 상당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다만, 부당한 수리지연이나 출고지연 등의 사유로 인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기간은 인정하지 않음.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10일

구 분	지 급 기 준
3. 대차료	용 어 풀 이 동급 이라 함은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말합니다. 통상의 요금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말합니다. 규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별 세부기준(경형, 소형, 중형, 대형)에 따른 자동차의 규모를 말합니다. 대여자동차가 없는 차종이라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외의 차종을 말합니다. 통상의 수리기간이라 함은 보험개발원이 과거 3년간 렌트기간과 작업시간 등과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산출한 수리기간(범위)를 말합니다.
4. 휴차료	가. 지급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다. 인정기간 (1) 수리 가능한 경우 (가) 수리를 위해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인도하여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30일을 한도로 함.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부상으로 자동차의 수리가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행하지 못한 기간으로 함. (2) 수리 불가능한 경우 : 10일

구 분	지 급 기 준
5. 영 업 손 실	가. 지급대상 소득세 법령에 정한 있는 사업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을 파괴하여 휴업함으로써 상실된 이익 나. 인정기준액 (1)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 소득을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증빙서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2)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다. 인정기간 (1)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함. 그러나 합의지연 또는 부당한 복구지연으로 연장되는 기간은 휴업기간에 넣지 아니함. (2) 영업 손실의 인정기간은 30일을 한도로 함
6. 자동차 시 세 하 락 손 해	가. 지급대상 사고로 인한 자동차(출고 후 5년 이하인 자동차에 한함)의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나. 인정기준액 (1) 출고 후 1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20% (2)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5% (3)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인 자동차 : 수리비용의 10%

<별표 3> 과실상계 등

구 분	지 급 기 준
1.과실상계	가. 과실상계의 방법 (1) 이 기준의 「대인공제Ⅰ」, 「대인공제Ⅱ」, 「대물공제」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 측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함. (2) 「대인공제Ⅰ」에서 사망공제금은 위 (1)에서 상계한 후의 금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면 2,000만원을 보상하며, 부상공제금의 경우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와 간병비를 보상함. (3) 「대인공제Ⅱ」에서 사망공제금, 부상공제금 및 후유장애공제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1)에 의하여 상계한 후의 금액이 치료관계비와 간병비의 합산액에 미달하면 치료관계비(입원환자 식대를 포함하며, 「대인공제Ⅰ」에서 지급될수 있는 금액을 공제)와 간병비를 보상함. 나. 과실비율의 적용기준 별도로 정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의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사고 유형이 그 기준에 없거나 그 기준에 의한 과실비율의 적용이 곤란할 때에는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함. 그러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에 의한 과실비율을 적용함.
2.손익상계	공제사고로 인하여 다른 이익을 받을 경우 이를 상계하여 공제금을 지급함
3. 기왕증	가.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다만, 당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 (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함. 나.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함.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공제금 청구권자와 공제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음. ^(*)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별표4 상해의 구분과 책임공제금의 한도금액

<별표 4> 상해의 구분과 책임공제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관련)

1. 상해 구분별 한도금액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1급	2,000 만원	3,000 만원	1. 수술 여부와 상관없이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 (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양안 안구 파열로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3. 심장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 또는 스탠트그라프트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완전 사지마비 또는 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척추 손상을 동반한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 7. 척추 손상을 동반한 척추 신연손상 또는 전위성(회전성) 골절 8.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0.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골의 분절 소실로 유리생골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근육, 근막 또는 피부 등 연부 조직을 포함한 경우에 적용한다) 14. 화상·좌창·괴사창 등 연부 조직의 심한 손상이 몸 표면의 9퍼센트 이상인 상해 15. 그 밖에 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급	1,000 만원	1,5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흉부 기관, 기관지 파열, 폐 손상 또는 식도 손상으로 절제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2급	1,000 만원	1,500 만원	3. 내부 장기 손상으로 장기의 일부분이라도 적출 수술을 시행한 상 해 4. 신장 파열로 수술한 상해 5.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를 동반한 상해 6. 신경 손상 없는 불안정성 방출성 척추 골절로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또는 경추 골절(치돌기 골절을 포함한다) 또는 탈구 로 할로베스트나 수술적 고정술을 시행한 상해 7. 상완 신경총 상부간부 또는 하부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한 상해 8.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9.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 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0. 대퇴 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대퇴골 경부 분쇄 골절, 전자하부 분쇄 골절, 과부 분쇄 골절, 경골 과부 분쇄 골절 또는 경골 원위 관절내 분쇄 골절 12.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 을 시행한 상해 14. 사지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3급	1,000 만원	1,2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 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 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 다) 3. 단안 안구 적출술 또는 안구 내용 제거술과 의안 삽입술을 시행 한 상해 4. 흉부 대동맥 손상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혈관 손상으로 수술을 시 행하지 않은 상해 5. 절제술을 제외한 개흉 또는 흉강경 수술을 시행한 상해(진단적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는 4급에 해당한다)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3급	1,000 만원	1,200 만원	6. 요도 파열로 요도 성형술 또는 요도 내시경을 이용한 요도 절개술을 시행한 상해 7. 내부 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장기 적출 없이 재건수술 또는 지혈수술 등을 시행한 상해 8. 척추 손상으로 불완전 하반신마비를 동반한 상해 9. 견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상완부 완전 절단(주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3. 대퇴골 또는 경골 골절(대퇴골 골두 골절은 제외한다) 14. 대퇴부 완전 절단(슬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슬관절의 전방 및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1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족근관절의 손상으로 족근골의 완전탈구가 동반된 상해 18.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9. 그 밖에 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4급	900 만원	1,0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고도인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각막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 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유리체 출혈, 망막 박리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4. 흉부 손상 또는 복합 손상으로 인공호흡기를 시행한 상해(기관절개술을 시행한 경우도 포함한다) 5. 진단적 목적으로 복부 또는 흉부 수술을 시행한 상해(복강경 또는 흉강경 수술도 포함한다) 6. 상완신경총 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4급	900 만원	1,000 만원	7.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2개 이상의 주요 말초신경 장애를 보이는 손상에 적용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상완골 경부 골절 9. 상완골 간부 분쇄성 골절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에 적용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요골 원위부 골절과 척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갈레아찌 골절을 말한다) 12. 척골 근위부 골절과 요골 골두 탈구가 동반된 상해(몬테지아 골절을 말한다) 13. 전완부 완전 절단(완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 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수근골 골절 및 탈구가 동반된 상해 16.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7. 불안정성 골반골 골절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18.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9.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비구 골절 또는 비구 골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2. 하퇴부 완전 절단(족관절부 이단을 포함한다)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거골 또는 종골 골절 24.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5. 사지의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경 피판술 또는 원거리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4급	900 만원	1,000 만원	26. 화상, 좌창, 피사창 등으로 연부 조직의 손상이 몸 표면의 약 4.5퍼센트 이상인 상해 27. 그 밖에 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5급	900 만원	9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안와 골절에 의한 복시로 안와 골절 재건술과 사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 복강내 출혈 또는 장기 파열 등으로 중재적 방사선학적 시술을 통하여 지혈술을 시행하거나 경피적 배액술 등을 시행하여 보존적으로 치료한 상해 4. 안정성 추체 골절 5. 상완 신경총 상부 간부 또는 하부 간부의 완전 손상으로 수술하지 않은 상해 6. 상완골 간부 골절 7.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8.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 9. 요골 경상돌기 골절 10. 요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11. 수근 주상골 골절 12. 수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14. 고관절의 골절성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비구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15.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대퇴골두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5급	900 만원	900 만원	17. 대퇴골 또는 근위 경골의 견열골절 18. 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 20. 슬개골 골절 21. 족관절의 양과 골절 또는 삼과 골절(내과, 외과, 후과를 말한다) 22.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그 밖의 족근골 골절(거골 및 종골은 제외한다) 24. 중족족근관절 손상(리스프랑 관절을 말한다) 25.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근부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7.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한 상해 28.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6개 이상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0. 다발성 사지의 주요 혈관 손상으로 봉합술 또는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3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32. 23치 이상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3. 그 밖에 5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6급	500 만원	7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정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2.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중등도에 해당하는 상해(신경학적 증상이 48시간 미만 지속되는 경우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3. 전안부 안내 수술을 시행한 상해(외상성 백내장, 녹내장 등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6급	500 만원	700 만원	4. 심장 타박 5. 폐좌상(일측 폐의 50퍼센트 이상 면적을 흉부 CT 등에서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 6. 요도 파열로 유치 카테타, 부지 삽입술을 시행한 상해 7.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한 상해 8. 견관절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9.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0.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견관절의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상완골 대결절 견열 골절 13. 상완골 원위부 견열골절(외상과 골절, 내상과 골절 등에 해당한다) 14. 주관절부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5.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6.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7. 요골간부 또는 원위부 관절외 골절 18. 요골 경부 골절 19. 척골 주두부 골절 20. 척골 간부 골절(근위부 골절은 제외한다) 21. 다발성 수근중수골 관절 탈구 또는 다발성 골절탈구 22. 무지 또는 다발성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3. 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슬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5. 반월상 연골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6. 족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6급	500 만원	700 만원	27. 족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또는 골절을 동반하지 않은 원위 경비골 이개 28.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9. 무족지 또는 다발성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0. 사지 근 또는 건 파열로 3개 이상 5개 이하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31. 19치 이상 2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32. 그 밖에 6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7급	500 만원	500 만원	1. 다발성 안면 두개골 골절 또는 뇌신경 손상과 동반된 안면 두개골 골절 2. 복시를 동반한 마비 또는 제한 사시로 사시수술을 시행한 상해 3. 안와 골절로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4. 골다공증성 척추 압박골절 5. 쇄골 골절 6. 견갑골 골절(견갑골극, 체부, 흉곽내 탈구, 경부, 과부, 견봉돌기, 오구돌기를 포함한다) 7.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 완전 파열 8. 상완신경총 불완전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골 골두 또는 척골 구상돌기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척골 경상돌기 기저부 골절 11.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12.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3. 요수근관절 골절 및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주상골 외 수근골 골절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7급	500 만원	500 만원	15. 수근부 주상골·월상골간 인대 파열 16. 수근중수골 관절의 탈구 또는 골절탈구 17. 다발성 중수골 골절 18. 중수수지관절의 골절 및 탈구 19. 무지를 제외한 단일 수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0. 골반골 관절의 이개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1. 고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비골 간부 골절 또는 골두 골절 23. 족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4. 족관절 내과, 외과 또는 후과 골절 25. 무족지를 제외한 단일 족지의 완전 절단 소실로 재접합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6. 16치 이상 1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7. 그 밖에 7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8급	240 만원	300 만원	1.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이 정도인 상해(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한다) 2. 상악골, 하악골, 치조골 등의 안면 두개골 골절 3. 외상성 시신경병증 4. 외상성 안검하수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복합 고막 파열 6. 혈흉 또는 기흉이 발생하여 폐쇄식 흉관 삽관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3개 이상의 다발성 늑골 골절 8. 각종 돌기 골절(극돌기, 횡돌기) 또는 후궁 골절 9. 견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8급	240 만원	300 만원	10. 상완골 과상부 또는 상완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경과 골절, 과간 골절, 내과 골절, 소두 골절 등을 말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1. 주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2. 중수골 골절 13. 수지골의 근위지간 또는 원위지간 골절 탈구 14. 다발성 수지골 골절 15. 무지 중수지관절 측부인대 파열 16.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 골절(천골 골절 및 미골 골절을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슬관절 십자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8. 3개 이상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9. 수족지골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0. 사지의 근 또는 건 파열로 하나 또는 두 개의 근 또는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1. 사지의 주요 말초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2. 사지의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3. 사지의 다발성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24. 사지의 연부 조직 손상으로 피부 이식술이나 국소 피판술을 시행한 상해 25. 13치 이상 1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6. 그 밖에 8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9급	240 만원	240 만원	1.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2. 2개 이하의 단순 늑골골절 3. 고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9급	240 만원	240 만원	4. 음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5. 흉골 골절 6. 추간판 탈출증 7. 흉쇄관절 탈구 8. 주관절 내측 또는 외측 측부 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요수근관절 탈구(수근골간관절 탈구, 원위 요척관절 탈구를 포함한다)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0. 수지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1. 수지관절 탈구 12. 슬관절 측부인대 부분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3. 2개 이하의 중족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한 상해 15. 그 밖에 견열골절 등 제불완전골절 16. 아킬레스건, 슬개건, 대퇴 사두건 또는 대퇴 이두건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17. 수족지 신전건 1개의 파열로 건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18. 사지의 주요 혈관손상으로 봉합술 혹은 이식술을 시행한 상해 19. 11치 이상 12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20. 그 밖에 9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0급	160 만원	200 만원	1. 3cm 이상 안면부 열상 2. 안검과 누소관 열상으로 봉합술과 누소관 재건술을 시행한 상해 3. 각막, 공막 등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만 시행한 상해 4. 견관절부위의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외상성 상부관절와순 파열 중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6. 수족지관절 골절 및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7. 하지 3대 관절의 혈관질환 8. 연부조직 또는 피부 결손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9. 9치 이상 10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10. 그 밖에 10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1급	160 만원	160 만원	1. 뇌진탕 2. 안면부의 비골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3. 수지골 골절 또는 수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4. 족지골 골절 또는 족지관절 탈구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5. 6치 이상 8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6. 그 밖에 11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2급	80 만원	120 만원	1.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 2. 3cm 미만 안면부 열상 3. 척추 염좌 4. 사지 관절의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 5. 사지의 열상으로 창상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길이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6. 사지 감각 신경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7. 4치 이상 5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8. 그 밖에 12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13급	80 만원	80 만원	1. 결막의 열상으로 일차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 2. 단순 고막 파열 3. 흉부 타박상으로 늑골 골절 없이 흉부의 동통을 동반한 상해 4. 2치 이상 3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3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상해 급별	한도금액		상해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14급	80 만원	50 만원	1. 방광, 요도, 고환, 음경, 신장, 간, 지라 등 내부장기 손상(장간막 파열을 포함한다)으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상해 2. 수족지 관절 염좌 3. 사지의 단순 타박 4. 1치 이하의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 5. 그 밖에 14급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상해

2. 영역별 세부지침

영역	내용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2가지 이상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상해부터 하위 3등급(예: 상해내용이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급까지) 사이의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만 가장 높은 상해 내용의 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이하 "병급"이라 한다)한다.
	나. 일반 외상과 치과보철을 필요로 하는 상해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 등급별 금액을 배상하되, 그 합산액이 1급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 1개의 상해에서 2개 이상의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의 요인이 있을 때 등급 상향 또는 하향 조정은 1회만 큰 폭의 조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향 조정 요인과 하향 조정 요인이 여러 개가 함께 있을 때에는 큰 폭의 상향 또는 큰 폭의 하향 조정 요인을 각각 선택하여 함께 반영한다.
	라. 재해 발생 시 만 13세 미만인 사람은 소아로 인정한다.
	마. 연부 조직에 손상이 심하여 유리 피판술, 유경 피판술, 원거리 피판술, 국소 피판술이나 피부 이식술을 시행할 경우 안면부는 1등급 상위등급을 적용하고, 수부, 족부에 국한된 손상에 대해서는 한 등급 아래의 등급을 적용한다.
두부	가. "뇌손상"이란 국소성 뇌손상인 외상성 두개강안의 출혈(경막상·하출혈, 뇌실 내 및 뇌실질 내 출혈, 거미막하 출혈 등을 말한다) 또는 경막하 수혈액낭종, 거미막 낭종, 두개골 골절(두개 기저부 골절을 포함한다) 등과 미만성 축삭손상을 포함한 뇌좌상을 말한다.
	나. 4급 이하(4급에서 14급까지를 말한다)에서 의식 외에 뇌신경 손상이나 국소성 신경학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한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다. 신경학적 증상은 글라스고우 혼수척도(Glasgow coma scale)로 구분하며, 고도는 8점 이하, 중등도는 9점 이상 12점 이하, 경도는 13점 이상 15점 이하를 말한다.
	라. 글라스고우 혼수척도는 진정치료 전에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마. 글라스고우 혼수척도 평가 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기관지 삽관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바. 의무기록 상 의식상태가 혼수(coma)와 반혼수(semicoma)는 고도, 혼미(stupor)는 중등도, 기면(drowsy)은 경도로 본다.
	사. 두피 좌상, 열창은 14급으로 본다.

영역		내용
두부		아.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6급 2호를 적용한다.
		자. 외상 후 급성 스트레스 장애는 다른 진단이 전혀 없이 단독 상병으로 외상 후 1개월 이내 발병된 경우에 적용한다.
흉·복부		심장타박(6급)의 경우, ①심전도에서 Tachyarrhythmia 또는 ST변화 또는 부정맥, ②심초음파에서 심낭액증가소견이 있거나 심장벽운동저하, ③심장효소치증가(CPK-MB, and Troponin T)의 세가지 요구 충족 시 인정한다.
척추		가. 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3 이하인 경우이며, 불완전 마비는 근력등급 4인 경우로 정한다.
		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추간판 탈출증이 외상으로 증상이 발생한 경우나 악화된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다. 척추 손상으로 인하여 신경근증이나 감각이상을 호소하는 경우는 9급으로 본다.
		라. 마미증후군은 척추손상으로 본다.
상·하지	공통	가. 2급부터 11급까지의 내용 중 사지 골절에서 별도로 상해 등급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골절은 해당 등급에서 2급 낮은 등급을 적용하며, 도수 정복 및 경피적 판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해당 등급에서 1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나.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 거스틸로 2형 이상(개방창의 길이가 1cm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개방성 골절 또는 탈구에서만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다. 2급부터 11급까지의 상해 내용 중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지 않은"이라고 명기되지 않은 각 등급 손상 내용은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를 말하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가 따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는 두 등급 하향 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 양측 또는 단측을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병합하지 않으나, 별도 규정이 없는 양측 손상인 경우에는 병합한다.
		마. 골절에 주요 말초신경의 손상 동반 시 해당 골절보다 1등급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바. 재접합술을 시행한 절단소실의 경우 해당부위의 절단보다 2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사. 아절단은 완전 절단에 준한다.
		아. 관절 이단의 경우는 상위부 절단으로 본다.

영역		내용
상·하지	공통	자. 골절 치료로 인공관절 치환술 시행할 경우 해당부위의 골절과 동일한 등급으로 본다.
		차. 사지 근 또는 건의 부분 파열로 보존적으로 치료한 경우 근 또는 건의 단순 염좌(12급)로 본다.
		카. 사지 관절의 인공관절 치환 후 재치환 시 해당 부위 골절보다 1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타. 보존적으로 치료한 사지 주요관절 골절 및 탈구는 해당관절의 골절 및 탈구보다 3등급 낮은 등급을 적용한다.
		파. 수술을 시행한 사지 주요 관절 탈구는 해당 관절의 보존적으로 치료한 탈구보다 2등급 높은 등급을 적용한다.
		하. 동일 관절 혹은 동일 골의 손상은 병합하지 않으며 상위 등급을 적용한다
		거. 분쇄 골절을 형성하는 골절선은 전상 골절이 아닌 골절선으로 판단한다.
		너. 수족지 절단 시 절단부위에 따른 차이는 두지 않는다.
		더. "근, 건, 인대 파열"이란 완전 파열을 말하며, 부분 파열은 수술을 시행한 경우에 완전 파열로 본다.
		러. 사지골 골절 중 상해등급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지골 골절(견열골절을 포함한다)은 제불완전골절로 본다. 다만, 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경우는 해당 부위 골절 항에 적용한다.
		머. 사지골 골절 시 시행한 외고정술도 수술을 한 것으로 본다.
		버. 소아의 경우, 성인의 동일 부위 골절보다 1급 낮게 적용한다. 다만, 성장판 손상이 동반된 경우와 연부조직 손상은 성인과 동일한 등급을 적용한다.
		서. 주요 동맥 또는 정맥 파열로 봉합술을 시행한 상해의 경우,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이란 수술을 통한 혈행의 확보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하며, "다발성 혈관 손상"이란 2개 부위 이상의 주요 동맥 또는 정맥의 손상을 말한다.
	상지	가. 상부관절순 파열은 외상성 파열만 인정한다.
		나. 회전근개 파열 개수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다. 6급의 건관절 탈구에서 재발성 탈구를 초래할 수 있는 해부학적 병변이 병발된 경우는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급을 적용한다.
		라. 견봉 쇄골간 관절 탈구, 관절낭 또는 견봉 쇄골간 인대 파열은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에 포함되고, 견봉 쇄골인대 및 오구 쇄골인대의 완전 파열로 수술한 경우 7급을 적용하며, 부분 파열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 9급을 적용하고, 단순 염좌의 경우 12급을 적용한다.

영역	내용
하지	가. 양측 치골지 골절, 치골 상하지 골절 등에서는 병급하지 않는다.
	나. 천골 골절, 미골 골절은 골반골 골절로 본다.
	다. 슬관절 십자인대 파열은 전후방 십자인대의 동시 파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병급하지 않으나 내외측 측부인대 동시 파열, 십자인대와 측부인대 파열,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은 병급한다.
	라. 후경골건 및 전경골건 파열은 족관절 측부인대 파열로 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등급으로 본다.
	마. 대퇴골 또는 경비골의 견열성 골절의 경우, 동일 관절의 인대 손상에 대하여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인대 손상 등급으로 본다.
	바. 경골 후과의 단독 골절 시 족관절 내과 또는 외과의 골절로 본다.
	사. 고관절이란 대퇴골두와 골반골의 비구를 포함하며, "골절 탈구"란 골절과 동시에 관절의 탈구가 발생한 상태를 말한다.
	아. 불안정성 골반 골절은 골반환을 이루는 골간의 골절 탈구를 포함한다.
	자. "하지의 3대 관절"이란 고관절, 슬관절, 족관절을 말한다.
	차. 슬관절의 전방 또는 후방 십자인대의 파열은 완전파열(또는 이에 준하는 파열)로 인대 복원수술을 시행한 파열에 적용한다.
	카. 골반환이 안정적인 골반골의 수술을 시행한 골절은 치골 골절로 수술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별표 5>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공제금의 한도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1급	1억원	1억 5,000 만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5. 반신불수가 된 사람 6. 두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두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8.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2급	9,000 만원	1억 3,500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3급	8,000 만원	1억 2,000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자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일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5.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4급	7,000 만원	1억 5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전부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쪽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두 발을 족근중족(Lisfranc)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급	6,000 만원	9,000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쪽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 6.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7.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8.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6급	5,000 만원	7,5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고막이 대부분 결손되거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한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척주에 뚜렷한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을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손의 5개 손가락을 잃거나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7급	4,000 만원	6,000 만원	1.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두 귀의 청력이 모두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3. 한쪽 귀가 전혀 들리지 아니하게 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5개의 손가락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발을 족근중족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0.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11.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사람 13. 양쪽의 고환을 잃은 사람
8급	3,000 만원	4,500 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2.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4.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5. 한쪽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팔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9. 한쪽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10.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잃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9급	2,250 만원	3,800 만원	1.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4.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사람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6.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8.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다른 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9.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 10.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3. 한쪽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4. 생식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
10급	1,880 만원	2,700 만원	1. 한쪽 눈이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2. 말하는 기능이나 음식물을 씹는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3. 14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귀에 입을 대고 말하지 아니하면 큰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는데 지장이 있는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10급	1,880 만원	2,700 만원	6.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 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3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8. 한쪽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0.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11급	1,500 만원	2,300 만원	1. 두 눈이 모두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거나 뚜렷한 운동 장애가 남은 사람 2.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장애가 남은 사람 3. 한쪽 눈의 눈꺼풀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한쪽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 5. 두 귀의 청력이 모두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6. 척주에 기형이 남은 사람 7.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 또는 넷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손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9.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11. 10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12급	1,250 만원	1,900 만원	1. 한쪽 눈의 근접반사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있거나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2.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12급	1,250 만원	1,900 만원	3. 7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4. 한쪽 귀의 귓바퀴가 대부분 결손된 사람 5.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사람 6.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7.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애가 남은 사람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사람 9. 한쪽 손의 가운데손가락이나 넷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3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엄지발가락 또는 그 외의 4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2.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13. 외모에 흉터가 남은 사람
13급	1,000 만원	1,500 만원	1.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2. 한쪽 눈에 반맹증, 시야협착 또는 시야결손이 남은 사람 3.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4. 5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5.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잃은 사람 6.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7.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의 끝관절을 굽히고 펼 수 없게 된 사람 9. 한쪽 다리가 1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10. 한쪽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잃은 사람 11. 한쪽 발의 둘째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이 둘째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한쪽 발의 가운데 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3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장애 급별	한도금액		신체장애 내용
	'16. 3.31. 이전	'16. 4.1. 이후	
14급	630 만원	1,000 만원	1.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있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사람 2. 3개 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한 사람 3.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하게 된 사람 4.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5. 다리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 6.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7.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마디뼈의 일부를 잃은 사람 8.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 외의 손가락 끝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 9. 한 발의 가운데발가락 이하의 발가락 1개 또는 2개를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10.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비고>

1.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한다.
2.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 시력표로 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 시력을 측정한다.
3. “손가락을 잃은 것”이란 엄지손가락은 지관절, 그 밖의 손가락은 제1지관절 이상을 잃은 경우를 말한다.
4.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손가락 끝부분의 2분의 1 이상을 잃거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손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5. “발가락을 잃은 것”이란 발가락의 전부를 잃은 경우를 말한다.
6. “발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것”이란 엄지발가락은 끝관절의 2분의 1 이상을, 그 밖의 발가락은 끝관절 이상을 잃거나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엄지발가락의 경우에는 지관절을 말한다)에 뚜렷한 운동장애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7. “흉터가 남은 것”이란 성형수술을 한 후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한 흔적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별표5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공제금의 한도금액

8. “항상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시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것”이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음식섭취, 배뇨 등은 가능하나, 그 외의 일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10. “항상보호 또는 수시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의사가 판정하는 노동능력상실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타당한 기간으로 정한다.
11.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애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12.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아 평생 동안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
1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애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신체적 능력은 정상이지만 뇌손상에 따른 정신적 결손증상이 인정되는 경우
 - 나. 전간(癲癇) 발작과 현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의학적·타각적(他覺的) 소견으로 증명되는 사람
 - 다. 사지에 경도(輕度)의 단마비(單痲痺)가 인정되는 사람
1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4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것”이란 중등도(中等度)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노동능력이 일반인의 2분의 1 정도만 남은 경우를 말한다.
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것”이란 중등도의 흉복부 장기의 장애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Ⅰ 자동차캐리어 탑재 「자전거손해」 특별약관

1. 가입대상

이 특별약관은 자동차공제약관의 대물공제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조합원의 범위

이 특별약관에서 조합원이라 함은 자동차공제약관 제11조 공제책임 2. 조합원의 범위에 열거한 자를 말합니다.

3. 보상내용

공제조합은 조합원이 자동차캐리어를 장착한 공제계약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자동차캐리어에 탑재한 자전거를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 배상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보상한도 및 지급공제금의 계산

공제조합이 매 사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제금은 다음 금액을 합친 액수로 하되, 1사고당 300만원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다만(나)의 비용은 보상한도에 불구하고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자동차공제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

나. 자동차공제약관 제11조 1항 나호의 (2)에 의하여 지출한 비용

5.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공제조합은 자동차공제약관 제12조 조합이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면책사항)의

자동차캐리어 탑재 「자전거손해」 특별약관

1. 일반면책사항 대물공제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도난(일부도난 포함) 및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합니다.

6. 공제분담금의 납입 및 할인·할증

조합원은 자동차캐리어에 탑재한 자전거를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을 집으로써 입은 손해를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제조합에 공제분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가. 자동차캐리어에 탑재한 자전거 보상 특별약관 기본공제금은 연간 대당 162,840원으로 합니다.

나. 공제계약기간은 대물공제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합니다.

다. 위 특별약관에 의한 할인·할증은 자동차공제약관 제49조를 적용합니다.

7.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동차공제약관에 따릅니다.

8. 시행일자

본 특별약관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